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핑 정의 확대 및 약물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신설 등〉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52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도평 정의 확대 및 약물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신설 등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정하의원 등 18인
2. 발 의 일: 2025. 3. 18.
3. 회 부 일: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도핑이라 정의하고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핑기술이 발전하면서 도핑행위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은 도핑행위를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뿐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등 선수를 지원하는 인력의 금지약물 거래·시료채취 거부 등 다양한 행위를 도핑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 강화를 위한 금지약물 사용’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하여 비고의적 도핑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이사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해 선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나 수집·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비한 사항들을 현행법에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 복용,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0호).
- 나. “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 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와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의 운영’을 담당함(안 제35조제1항).
- 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35조제3항).
- 마.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

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35조의3제1항 신설).

바. 한국도핑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안 제3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8조제5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도핑 정의 확대 및 약물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도핑’을 재정의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규정을 도입하며, 이에 맞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안 제35조제1항제3호·제5호 및 동조 제3항).
- 또한, 개정안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 수행자에게 업무상 자료 누설 등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안 제48조제5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 복용,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1. ~ 12. (생 략)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
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1. · 2. (생 략)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
에 따른 제재

4. (생 략)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
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
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생 략)

② (생 략)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신 설>

다.

10의2. “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세계
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치
료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
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1. ~ 12. (현행과 같음)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도핑 결과의 관리-----

4. (현행과 같음)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청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8조(벌칙)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6.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도핑’을 정의하고, 도핑 방지 및 도핑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도핑’의 정의가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상 금지되는 행위와 괴리가 있고, 약물의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자료 수집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도핑’을 재정의하고, ②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규정을 도입하며, ③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④ 도핑방지위원회가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 수행자에게 업무상 자료 누설 등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① ‘도핑’ 재정의(안 제2조제10호)와 관련하여, ‘도핑’의 범위를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 목적, ㉡ 행위, ㉢ 금지기준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문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핑의 사각지대 방지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현행법상 ‘도핑’은 ㉠ ‘운동능력 강화’ 목적, ㉡ ‘금지목록’, 즉,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 ‘성분’이 아닌 ‘약물’ 기준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¹⁾

- 또한,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²⁾가 제정한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2조·제13조,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9조, 「경륜·경정 도핑방지규정」 제5조에서도 ‘도핑’이 ‘성분’이 아닌 ‘약물’ 기준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 그런데, 「세계도핑방지규약」상 ‘도핑’은 ㉠ 목적을 불문하고, ㉡ 금지성분·금지방법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 시도·보유·부정거래(판매·운반·분배 등)·부정거래 시도·공모·공모 시도, 시료 채취 회피·거부·불응, 도핑관리과정 조작·조작 시도, 관련 제보 제지·보복 등 11가지의 금지행위를 포괄하며, ㉢ ‘약물’이 아닌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인바³⁾,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⁴⁾

1) 구체적인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금지목록」에 규정되어 있음

2)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 관련 연혁 >

04. 10. 1.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발효
05. 10. 19.	유네스코 제33차 전체회의,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조약 제1841호) 채택
06. 11. 13.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설립
07. 4. 1.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발효 (07. 2. 국회 비준)
07. 4. 11.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신설
07. 4. 27.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가입
07. 6. 22.	「한국도핑방지규정」 제정 (07. 12. 19.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인준)
15. 5. 18.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선수의 도핑검사) 신설
16. 2. 18.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정
19. 6. 10.	「경륜·경정 도핑방지규정」 제정

자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3) 「세계도핑방지규약」

제1조(도핑의 정의) 도핑이란 규약 2.1항 내지 2.11항에서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핑방지규정위반의 발생을 말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조제10호의2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용어 정의와의 표현상 일관성, 법률상 정의 규정의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2조(정의) (본문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도핑’ 재정의 관련 현행법-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목적	‘운동능력 강화’로 제한	제한X
범위	‘금지목록’으로 제한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모든 도핑 행위 포함
금지기준	약물	성분

- ②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안 제2조제10호의2)와 관련하여, ‘치료 목적의 금지약물 복용 또는 방법의 예외적 사용’에 관한 내용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세계도핑방지규약」상 ‘치료목적사용면책(TUEs)’⁵⁾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 규정으로 도입하고 있는바, 선수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및 비교의적 도핑 위반⁶⁾ 예방 등의 측면에서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체계에 맞춰 수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 복용,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 -----가 정한 기준에 따라 ----- ----- ----- ----- ----- ----- -----
--	--	--

5) 「세계도핑방지규약」

4.4. 치료목적사용면책[TUEs]

- 4.4.1. 금지성분 또는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및 사용 시도, 보유, 투여 또는 투여 시도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부여된 TUE 규정에 부합된다면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 < 최근 3개년 한국 선수 도핑방지규정위반 중 비교의적 도핑 사례 >

(’24.12.31. 기준)

연도	전체 위반 건수(a)	고의적 위반 건수	비교의적 위반 건수(b)	비교(b/a)
’21년	18건	14건	4건	22%
’22년	25건	14건	11건	44%
’23년	21건	17건	4건	19%
’24년	20건	5건	15건	7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⁷⁾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치료면책사용면책’ 정의 관련 현행법-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정의규정 존부	없음	신설
사용기준	약물	성분

○ ③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안 제35조제1항제3호·제5호 및 동조 제3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 내용을 타 개정규정 등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위원을 ‘이사’로 본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관」⁸⁾에 ‘이사회’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하는바, 사업 및 운영 관련 명확성 제고, 법체계 정비 및 입법미비 보완 등의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정관 기재 사항(이사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⁹⁾,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경우에도 정관 기재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⁰⁾.

7)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설치·운영 중인 조직명도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임(「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관」 제37조의5 등)

8)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관」 제8조(임원)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원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 감사 1인을 두며, 위원을 이사로 본다.

9)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 및 이사회 관련 현행법-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사업 확대		도핑 검사결과에의 관리 및 제재	도핑 결과의 관리 및 제재
이사회	명칭	-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관」 상 ‘위원회’ ¹¹⁾)	‘이사회’ 명시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	정관으로 정함 (‘임원’)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¹²⁾)
	권한	- (정관으로 정함(문체부 승인))	
	위원/임원 임기· 선출방법	정관으로 정함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관」 상 ‘감사’: ‘임원’ 해당, ‘위원’ 미 해당, 이사회 출석·진술 가능

- 10) (문화체육관광부) 현행법의 법적 모호성과 운영 유연성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관으로 운영 사항을 이관하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운영 관련 규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감독과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정관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이 필요함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③ <u>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u>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③ <u>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u>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③ ----- ----- ----- - 등 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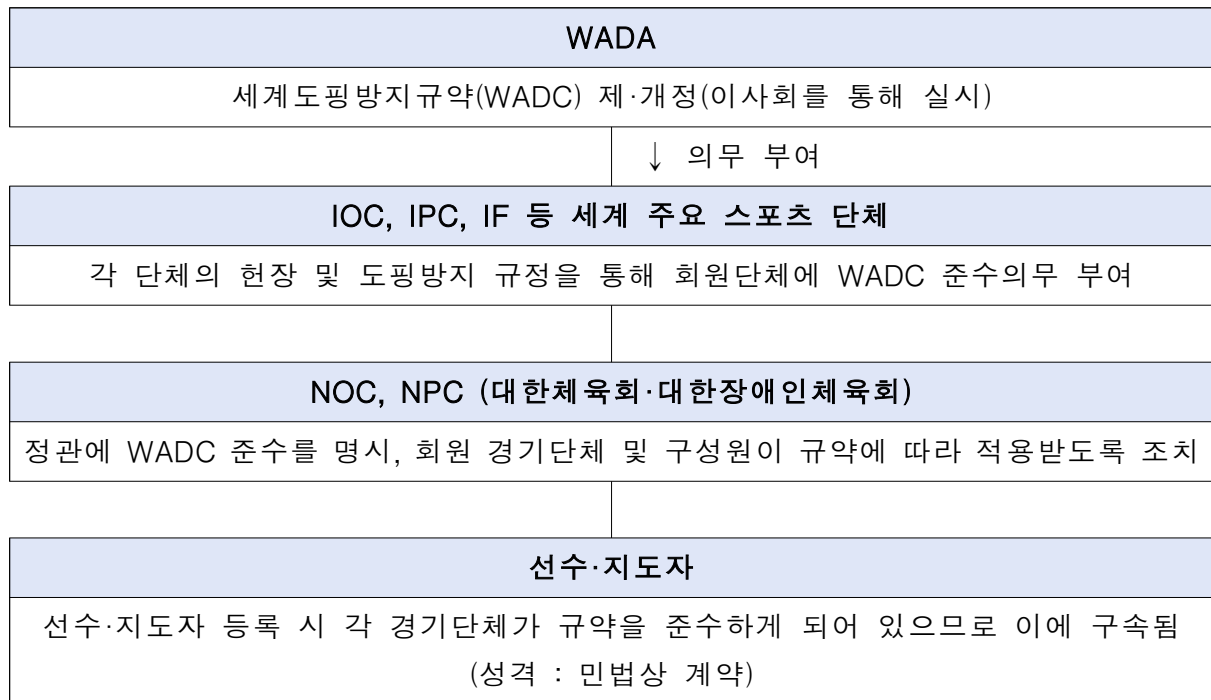
- 1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관**」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및 지위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며, 공정하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도핑방지위원회 사무국 및 업무부서가 보관하는 기록, 기타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12)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도핑방지 규정 관련 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도핑 방지 규정 자율 규약 적용 체계

- 현 도핑방지 규정의 적용 원리는 WADA에 IOC 등의 국제스포츠기구와 국제스포츠기구에 소속된 NOC 등이 자발적으로 가맹하여 작동하는 체계로서 일종의 자율규약 체제로 볼 수 있음.



[참고자료2] 도핑방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통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도핑방지활동 지원사업 개요

연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1년	5,347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도핑검사 시행 (5,043건) · 도핑방지교육 시행 (276,581명) - 온라인 교육 (269,140명) - 대면 교육 (7,441명) · 도핑위반사건 관리 - 도핑위반 혐의건수 (29명) - 위반자 제재건수 (18명)
'22년	5,33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도핑검사 시행 (5,125건) · 도핑방지교육 시행 (394,252건) - 온라인 교육 (377,005명) - 대면 교육 (17,247명) · 도핑위반사건 관리 - 도핑위반 혐의건수 (34명) - 위반자 제재건수 (25명)
'23년	5,52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도핑검사 시행 (5,573건) · 도핑방지교육 시행 (463,024명) - 온라인 교육 (419,789명) - 대면 교육 (43,235명) · 도핑위반사건 관리 - 도핑위반 혐의건수 (31명) - 위반자 제재건수 (21명)
'24년	5,527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도핑검사 시행 (5,686건) · 도핑방지교육 시행 (541,134명) - 온라인 교육 (493,433명) - 대면 교육 (47,701명) · 도핑위반사건 관리 - 도핑위반 혐의건수 (32명) - 위반자 제재건수 (20명)

□ 도평방지 대면교육 현황 ('24.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대표	2,553	1,859	2,810	2,167	582	524	1,486	1,630	1,571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1,143	1,108	1,206	1,040	21	52	1,860	2,946	3,793
학생선수	4,308	4,831	4,677	20,053	805	1,612	3,771	6,721	8,062
프로스포츠 선수	2,842	3,409	3,154	3,199	991	1,488	2,687	2,482	3,912
기타 (지도자, 선수지원요원 등)	11,848	12,281	12,671	15,902	980	3,765	7,443	29,456	30,363
합계	22,694	23,488	24,518	42,361	3,379	7,441	17,247	43,235	47,701

□ 도평방지 온라인교육 현황 ('24.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선수등록 시 교육	175,600	180,826	197,284	242,582	348,011	383,319	451,726
온라인교육	2,609	2,639	71,271	23,538	26,031	34,418	41,707
합계	178,209	183,465	268,555	266,120	374,042	417,737	493,433

□ 도핑검사 현황 ('24. 12. 31. 기준)

(단위: 건)

구분	전문체육			프로스포츠			총계
	경기장 중	경기장 외	계	경기장 중	경기장 외	계	
2016년	1,591	906	2,497	790	182	972	3,469
2017년	1,483	995	2,478	857	267	1,124	3,602
2018년	2,118	1,534	3,652	908	310	1,218	4,870
2019년	2,211	1,999	4,210	981	303	1,284	5,494
2020년	604	967	1,571	575	131	706	2,277
2021년	1,567	2,467	4,034	827	182	1,009	5,043
2022년	1,535	2,586	4,121	720	284	1,004	5,125
2023년	1,702	2,859	4,561	739	273	1,012	5,573
2024년	1,589	3,086	4,675	792	219	1,011	5,686

* 프로스포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5.5.18.)에 따라 '16년도부터 KADA 주관 시행

** 2020년 전국적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도핑검사 시행 축소

□ 치료목적사용면책 현황 ('24. 12. 31. 기준)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승인	88	104	76	143	51	118	140	142	152
불승인*	53	38	22	50	13	28	84	74	84
합계	141	142	98	193	64	146	224	216	236

* 불승인 건수는 반려 건수 포함한 수치임

□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운영 현황 ('24. 12. 31. 기준)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선수	43,186	56,525	54,008	65,978	49,918	222,921	374,052	468,373	502,854
의약사	5,934	9,940	11,456	8,801	3,717	4,802	6,865	8,198	9,186
지도자	3,205	3,523	2,998	3,057	2,029	4,162	4,785	6,677	7,241
체육단체	-	422	407	398	367	-	-	-	-
KADA	-	665	613	763	907	-	-	-	-
기타	17,382	7,748	9,117	8,865	7,020	14,510	13,898	13,999	16,350
합계	69,707	78,823	78,823	78,599	63,958	246,395	399,600	497,247	535,631

*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관련 용역사 변경으로 통계 산출방식 변경(KIMS '이용자 수'→약학정보원 '검색 횟수')

□ 도핑방지규정위반 현황 ('24. 12. 31. 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의 경륜·경정 선수 건 제외

○ 연도별 도핑행위 적발 현황

(단위: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도핑행위 적발 건수	27	23	18	25	21	20

○ 제재 및 항소위원회 운영 실적

구분	제재			항소		계 (B)+(C)
	청문없는결정1)	제재위원회 결정2) (A)	합계 (B)	항소위원회 결정3) (C)	항소율 (A)/(C)	
'19년	8건	19건	27건	8건	42%	35건
'20년	10건	13건	23건	5건	38%	28건
'21년	6건	12건	18건	8건	66%	26건
'22년	15건	10건	25건	5건	50%	30건
'23년	15건	6건	21건	4건	66%	25건
'24년	10건	10건	20건	5건	50%	25건

주1) 청문없는 결정: 선수가 청문을 포기하는 경우 청문 없이 KADA가 제재 결정

2) 제재위원회* 결정: 선수가 청문 개최를 요청할 시 제재위원회 심의 및 결정

* 법률, 의학, 약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3) 항소위원회* 결정: 이미 부과된 제재 결정에 대하여 선수가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로부터 독립된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가 제재 결정

* 「2021 WADA규약」 개정에 따라 도핑방지기구와 항소위원회 독립 운영이 요구되어 '21년부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운영 중

[참고자료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원문 예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안 건 번 호 : 제2024-101-001호

안 건 명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 청 인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2024. 2. 28.

주 문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성장호르몬.이뇨제의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및 구매 내역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경기단체 등록선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 중 경기단체 등록선수가 아닌 자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더 이상 그 처리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관계기관 간 도핑방지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자료4] 도핑방지 관련 해외 입법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도핑 정의

국가	조문 내용
독일	도핑방지법 제2조 - 협약에 따른 WADA규약의 규정을 넘어, 일부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을 둠
프랑스	스포츠법전 제L232-9, L232-9-1, L232-9-2, L232-9-3, L232-10, L232-10-3조 - 협약에 따른 WADA규약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열거식)
오스트리아	도핑방지법 제1조 - 협약에 따른 WADA규약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함(열거식)
호주	도핑방지법 제4조 - WADA규약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함(포괄식)
일본	도핑방지법 제2조 - 금지약물의 사용, 소지, 검사방해 기타 국제규약에 위반하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관계 기관간 정보 공유

국가	조문 내용
독일	도핑방지법 제8조 - 법원과 검찰청은 직권에 의해 도핑위반자를 제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독일반도핑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음 도핑방지법 제9조 - 독일 반도핑위원회는 도핑방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 도핑방지법 제10조 - 독일 반도핑위원회는 도핑방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정보 등을 수집, 처리, 사용할 수 있음
프랑스	스포츠법전 제L232-5 - 검사 관련 자료 및 관계기관 정보요청, 스포츠단체의 정보접근 권한 규정
오스트리아	도핑방지법 제30조 - 검찰은 도핑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도핑통제기관에 혐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도핑통제기관은 반도핑규정 위반에 관한 정당한 법적 이해관계자로 기록열람 권한 있음을 규정
호주	도핑방지법 제75조 - 호주도핑방지기구의 장은 스포츠 무결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정보나 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할 수 있음을 규정
일본	도핑방지법 제15조 - 국가는 국제 경기 대회 등의 개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의 행정기관, 센터, 일본도핑방지기구 및 국제 스포츠에서의 도핑 방지에 관한 기관 간 도핑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며, - 문부과학대신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업무상 자료·정보 보호 관련 벌칙 규정

	정보공유 근거	개인정보 보호 준수 의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벌칙	포괄적 정보 보호 관련 벌칙
프랑스	있음	있음	없음	없음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없음		
일본				
호주	있음	있음	있음	